

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0. 4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담양군과 인근 지역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, 2조)

나.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
라. 협의회 운영 및 수당 등(안 제7~9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0. 4.~10. 10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과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,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대학”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중 담양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(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
2. “상생협력”이란 군과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상생협력사업 및 지원) ①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
 2. 지역의 농업·경제·복지·문화·관광·환경·보건 등 군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
 3.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
 4.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
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상생협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
2. 상생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
3.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군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, 경제업무 담당 국장, 농업업무 담당 국장
2.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협회의의 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군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